

(붙임1)

2021년 용자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

※ 우선선정 점수와 관계없이 최우선선정

①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, ②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기업, ③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

선 정 항 목	항목별 가중치	비 고
■ 공통적용 항목	80점	
① 사망사고 감소 사업 참여 사업장(패트롤 등) • '20년~'21년 기술지도 사업장	10점	
② 투자공정의 유해·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• 소업종기준, 재해율 상위 10개업종 선정하여 적용	15점	• 재해율 통계: 지역별 300인 미만 (확정통계 사용)
③ 고용노동부·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단체의 감독·점검, 기술지원결과에 따라 개선지적을 받은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장	15점	•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
④ 고용증가 사업장 • 신청 전 1년 근로자수 비교	5점	
⑤ 산재장해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(해당 근로자 1명당 2점, 최대 5명인정) • 근로계약서, 산재장해보상금 지급확인서 등 확인	10점	•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수급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
⑥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 * ①노사문화 우수기업, ②NCS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, ③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기업 • 해당사항 1개 이상인 경우, 가중치 10점 적용	10점	• 인정서 및 대상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정
⑦ 법 「제84조 및 제89조와 영 제74조부터 제77조」까지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의 구입 또는 안전인증제품을 제작하는 사업장	10점	
⑧ 공생협력 참여한 협력업체 • '20년~'21년 공생협력 참여 협력업체	5점	
■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율 항목 • 2개 이상 항목으로 구성하되, 항목당 10점 이내	20점	• 일선기관별 추가 수립
⑨ 신규설립사업장	10점	• 산재보험성립일이 2018년 01월 01일 이후 사업장
⑩ 재해발생사업장	10점	• '19년, '20년 재해발생 사업장 (요양승인일 기준) ※ 안전보건공단 '개별사업장정보' 적용
계	100점	

※ 선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공통적용 항목 순번 → 자율 항목 순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적용

※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결정 후 지급 사업장은 당해연도 용자 신청·접수 불가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